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
제2권 104~104p 2. 경비원에 대한 형의 가중처벌	개념, 공식-설명	<p>적용 범위의 비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경비원</td> <td>특수경비원</td> </tr> <tr> <td>공 통</td> <td colspan="2"> 특수상해, 중상해, 상해치사, 폭행치사상,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, 체포·감금, 중체포·중감금, 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, 협박, 특수강요, 특수공갈, 재물손괴 </td> </tr> <tr> <td>차 이</td> <td>특수폭행</td> <td>폭 행</td> </tr> </table>	구 분	경비원	특수경비원	공 통	특수상해, 중상해, 상해치사 , 폭행치사상,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, 체포·감금, 중체포·중감금, 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, 협박, 특수강요, 특수공갈, 재물손괴		차 이	특수폭행	폭 행	<p>적용 범위의 비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경비원</td> <td>특수경비원</td> </tr> <tr> <td>공 통</td> <td colspan="2"> 특수상해, 상해치사, 폭행치사상,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, 체포·감금, 중체포·중감금, 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, 협박, 특수강요, 특수공갈, 재물손괴 </td> </tr> <tr> <td>차 이</td> <td>특수폭행</td> <td>폭 행</td> </tr> </table>	구 분	경비원	특수경비원	공 통	특수상해, 상해치사 , 폭행치사상,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, 체포·감금, 중체포·중감금, 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, 협박, 특수강요, 특수공갈, 재물손괴		차 이	특수폭행	폭 행
구 분	경비원	특수경비원																			
공 통	특수상해, 중상해, 상해치사 , 폭행치사상,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, 체포·감금, 중체포·중감금, 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, 협박, 특수강요, 특수공갈, 재물손괴																				
차 이	특수폭행	폭 행																			
구 분	경비원	특수경비원																			
공 통	특수상해, 상해치사 , 폭행치사상,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, 체포·감금, 중체포·중감금, 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, 협박, 특수강요, 특수공갈, 재물손괴																				
차 이	특수폭행	폭 행																			
제1권 170~170p ㉓ 회사의 해산사유	개념, 공식-설명	<p>㉓ 회사의 해산사유</p> <p>㉑ 회사의 공통된 해산사유(합자회사 제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, 합병, 파산,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<p>㉒ 상법상 각 회사의 개별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, 사원이 1인으로 된 때(상법 제227조 제2호·제3호) ·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(상법 제285조 제1항) ·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(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) ·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(상법 제517조 제1호의2·제2호) ·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, 사원이 없게 된 경우(상법 제287조의38 제1호·제2호) 	<p>㉓ 회사의 해산사유</p> <p>㉑ 공통된 해산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, 합병, 파산,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(상법 제227조 제1호, 제4호 내지 제6호) <p>㉒ 개별적 해산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, 사원이 1인으로 된 때(상법 제227조 제2호·제3호) ·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, 사원이 1인으로 된 때(상법 제269조 - 제227조 제2호·제3호),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쪽의 전원 퇴사(상법 제285조 제1항) ·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(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) ·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(상법 제517조 제1호의2·제2호) ·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, 사원이 없게 된 경우(상법 제287조의38 제1호·제2호) 																		
제2권 234~234p ㉑ 주요 검측대상	개념, 공식-설명	<p>㉑ 주요 검측대상</p> <p>건물 외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 검측 시 침투 가능한 창문, 출입구, 개구부 등에 안전조치를 실시한다. · 건물 외부 검측은 승하차 지점 및 건물 외부벽으로 확산하면서 실시한다.★ · 어지럽혀진 비품 및 흔적 등 폭발물 용기나 부스러기가 산재해 있는가를 확인한다. ·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산란케 하는 고의적(故意的)인 표시를 확인한다.★ · 움직일 수 있고 표면상 가치 있는 물건을 중점적으로 검측한다.★ 	<p>㉑ 주요 검측대상</p> <p>건물 외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 검측 시 침투 가능한 창문, 출입구, 개구부 등에 안전조치를 실시한다. · 건물 외부 검측은 승하차 지점 및 건물 외부벽으로부터 확산하면서 실시한다.★ · 어지럽혀진 비품 및 흔적 등 폭발물 용기나 부스러기가 산재해 있는가를 확인한다. · 주의력을 집중시키거나 산란케 하는 고의적(故意的)인 표시를 확인한다.★ · 움직일 수 있고 표면상 가치 있는 물건을 중점적으로 검측한다.★ 												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1권 306~306p 2. 청원경찰의 직무교육	개념, 공식-설명	2. 청원경찰의 <u>직무교육</u> (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, 제13조) ① ~ ③ 생략	2. 청원경찰의 <u>신임·직무교육</u> (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, 제13조) ① ~ ③ 생략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